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40

2025/11

발행인 조정희 | 총괄 박수진 | 감수 윤성순 | 담당 김소연

Email dokdo.ocean@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규범연구실(051-797-4642)

Contents

국제기구

유엔	2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0차 당사국총회 개최
UNEP	UNEP, 「세계 기후소송 보고서 2025」 발표

지역별 동향

아프리카	14
소말리아	소말리아 해적활동 재개 동향 및 시사점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19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홈페이지(www.km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642) 또는 이메일(dokdo.ocean@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0차 당사국총회(UNFCCC COP30) 개최

개요 및 의의

2025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 The 30th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되었다. UNFCCC COP는 협약 체제하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기후 거버넌스 회의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적응·기후금융 등 기후행동의 공동 규범과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유일한 다자 협상 플랫폼이다. 이번 COP30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추가 감축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 기후 취약국의 적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기후금융 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2025년은 당사국이 2035년 신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해야 하는 해이다. 이에 COP30에서 논의되는 감축 수준과 이행 조치 등은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감축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산불, 홍수, 해양 열파 등 전 지구적 기후재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COP30은 과학 기반의 정책 강화, 기후금융 확대, 탄소시장 제도 개선, 취약국 지원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결속과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COP30 회의장 전경



사진 출처: CGTN America's Post



우리 정부 주요 활동

우리나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1월 17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COP30 고위급 회의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61%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 탈석탄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는데,¹⁾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미래 산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GVCM은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탄소저감·배출권 거래를 보다 국제적이고 자발적으로 확장하려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정부는 이 시장을 통해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통합 산불관리 선언문'을 발표하며, 산불 예방·대응·복구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산불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번 COP30은 우리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시장·적응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처별 정책 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 기후대응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제 및 행동목표

이번 COP30 의장단은 이전 1차 글로벌 스톡테이크(GST-1: Global Stocktake 2023)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OP30에서 논의할 의제로 ① 에너지·산업, ② 산림·해양, ③ 농업·식품, ④ 도시·인프라, ⑤ 사회, ⑥ 재정·역량강화가 제안되었다.

첫 번째 의제는 에너지·산업·교통 부문의 전환이다. 탄소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핵심이 된다. 두 번째 의제는 산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자연기반 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

1) PPCA는 2017년 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탄 연료 사용을 전환하기 위한 국제 동맹이다.



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 번째 의제는 농업과 식량 체제의 전환을 다루며, 지속가능한 농업·식량 안보·탄소저감형 공급망 구축이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네 번째 의제는 도시·인프라·물관리 분야의 회복력 강화이며, 기후재난에 대비한 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다섯 번째 의제는 인간과 사회 발전을 주제로 하며, 보건·교육·포용성 등 사람 중심의 기후정책을 강조한다. 상기 의제를 포함한 교차이슈로 금융·기술·역량강화를 포함한 이행수단을 활성화가 여섯 번째 의제로 제시되었다. 재정·역량강화는 앞서 제시된 분야별 대응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기능한다.

표 1. COP30 의제

구분	주요내용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교통 부문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산업 및 운송 시스템 구조 변화
산림·해양	산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 자연 기반 해법(NbS) 강화
농업·식품	지속가능 농업 전환, 식량시스템 혁신, 탄소저감형 식품 공급망 구축
도시·인프라	도시·인프라·물관리 체계의 기후회복력 강화, 기후재난 대응 기반 확충
사회	보건·교육·사회적 포용 등 사람 중심의 기후전략 강화
재정·역량강화	금융·기술·역량강화 등 분야별 이행수단 활성화

표 출처: COP30 BRASIL
AMAZONIA

이 중 산림·해양 의제에서 제시하는 행동 목표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산림 황폐화를 중단·회복하기 위한 투자 확대, ② 사막화 문제 해결 및 자연·생태계의 보전·보호·복원 강화, ③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보전·복원 강화가 핵심 목표이며, 블루카본 정책 강화, 해운·관광 등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과 블루 파이낸스 확대, 기후-생물다양성-해양 거버넌스 시너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쟁점 및 방향

2025년 11월 10일 개막한 COP30은 회의의 목표를 ‘이행 중심의 COP’로 명확히 하고, 연대와 실행 의지를 보여주었다. 당사국들은 사전협의에서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회의 첫날 전체 의제를 신속히 채택하여, 다자주의와 협력적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하였다. 이번 COP30에서는 ① 기후변화 책임의 형평성 문제, ② 기후재원 확보와 접근성, ③



무역제한조치(UTMs: Unilateral Trade Measures)의 기후정책과의 연계성, ④ 이행점검 및 투명성 체계 강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표 2. COP30 쟁점

구분	주요내용
형평성	- 역사적 배출과 감축능력 차이를 반영한 책임 배분 - CBDR-RC를 NDC·BTR 등 명시 문제 - 아프리카 특수사정 고려 여부
재원	- 선진국 재원제공 의무 이행 방안 - 재원추적·보고·분담체계 등 - FRLD 확대·직접 접근성 강화 필요성
UTMs	- 기후 목적 무역조치와 개도국 개발권
이행점검·투명성	- BTR·NDC 종합보고서 정례화 및 1.5°C 정합성 검토 - 글로벌 적응목표 점검 지표 개발 - 재정 관련 사전보고 항목(적응·손실과 피해·수해국·예측가능성 등) 확대
기타	- JTWP 내 에너지전환 문구 포함 및 제도 설계

표 출처: 저자 작성

기후변화 책임의 형평성 문제는 국가별 역사적 배출 기여도와 현재의 감축 능력을 어떻게 공정하게 반영해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을 말한다. COP30에서 아프리카·중동 그룹 등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국의 능력(CBDR-RC: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표명하였으며, 이에 NDC, 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를 포함한 모든 관련 문서에 CBDR-RC 원칙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종 결정문에 CBDR-RC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각국의 역량에 따른 협정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별화 원칙이 반영되었다.

아프리카 그룹은 아프리카의 높은 기후 리스크, 적응능력의 구조적 취약, 개발 등을 이유로 아프리카 특수사정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라틴아메리카 그룹 등은 지역 편향을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BTR, 선진국 재원제공 의무, 손실과 피해 대응기(FRLD: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등 전 분야에서 재원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개발도상국 그룹은 선진국 재원제공 의무를 별도 의제로 신설하고, 재원 제공의무 추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EU·일본 등은 해당 의무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정문에는 선진국의 재원제공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년간 실무 프로그램(Two-year work programme)을 신설하고,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결정문에는 선진국의 적응재원 제공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하였던 기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2035년까지 적응재원을 최소 3배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번 COP30에서는 무역제한조치(UTMs)와 기후정책의 연계 확보 방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기후대응을 위한 무역조치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UTM에 따른 NDC 이행비용 증가·국제 공급망 왜곡·재정 유출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 최종 결정문에는 기후 대응 조치가 임의적·정당성 없는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UTM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7~28년에 고위급 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행점검 및 투명성 체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BTR과 NDC 검토에 관한 사항이다. EU, 소도서국연합(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등은 사무국에서 발간하는 BTR, NDC 종합보고서(Synthesis)를 1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1.5°C 정합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발도상국 그룹은 BTR, NDC 관련 신규 의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재원에 관해서는 사전보고 항목(적응·L&D·수혜국·예측 가능성·제공 일정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종적으로 BTR과 NDC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사국은 1.5°C 벨렝 미션(Belém Mission to 1.5), 3개년 BTR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목표의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COP30에서는 지난 2년간 개발한 글로벌 적응목표 점검 지표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표 후보군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향후 2년간 추가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 협의 끝에 지표 후보군의 일부를 삭제·수정하여 59개 지표로 구성된 벨렝 적응 지표(Belém Adaptation Indicators)가 채택되었다.

이외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JTWP: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에 포함할 문구에 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선진국 그룹은 NDC 로드맵 등 관련 문서에 탈화석연료(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발도상국 그룹은 에너지안보와 개발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은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EU·UK·Norway 등은 효율성,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최종적으로 탈화석연료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장국이 화석연료 전환(transition away) 로드맵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향후 탈화석연료 쟁점이 국제사회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막바지인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COP30에서 채택하기로 한 결정문과 실행계획을 하나로 묶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의장국은 무치랑 결정문(Mutirão Decision),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 패키지로 통합하여 채택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후속 이행체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나 아직 국가간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협약의 이행방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부담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므로, 협약 이행 문제는 앞으로도 국가 간 주요 쟁점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형평성, 자원, 무역, 에너지 전환과 같은 핵심 기후 이슈들은 각국의 개발전략과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호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조정과 협력 방안이 더욱 중요하게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전문연구원

hyelee@kmi.re.kr



- 출처 : [1] 동아사이언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75131>(검색일: 2025.11.19.)
- [2]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11121430122843>(검색일: 2025.11.19.)
- [3] 네이트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1117n20015>(검색일: 2025.11.19.)
- [4]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18043>(검색일: 2025.11.19.)
- [5] Global Witness, https://globalwitness.org/en/campaigns/fossil-fuels/everything-you-need-to-know-about-cop/?gad_source=1&gad_campaignid=12467226173&gbraid=0AAAAADm6LOBEYr9yvLySaHMTlXYrVWnli&gclid=CjwKCAiAz_DIBhBJEiwAVH2XwGjY9FqSoQmlaO-KkWLuj8PnPbBujRWAaw2bQHNVmCY01NRRNNwZNrxoCaxQQAvD_BwE(검색일: 2025.11.19.)
- [6] COP30 BRASIL AMAZONIA, <https://cop30.br/en/news-about-cop30/cop30-evening-summary>(검색일: 2025.11.19.)
- [7] IISD, <https://enb.iisd.org/belem-un-climate-change-conference-cop30>(검색일: 2025.11.19.)
- [8] IISD, <https://enb.iisd.org/sites/default/files/2025-11/enb12879e.pdf>(검색일: 2025.11.19.)
- [9] 관계부처합동 공동보도자료(2025. 11. 23.)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



유엔

UNEP

UNEP, 「세계 기후소송 보고서 2025」 발표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동향, 판결, 법적 쟁점 등 대표 사례를 분석한 「세계 기후소송 보고서 2025(Climate Litigation Report 2025)」를 발간하였다. 앞서 유엔환경계획은 2017년을 시작으로 2020년, 2023년에도 동일한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 2025년 판은 그 연속선상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 주요 국제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결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후소송 관련 국제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림 2. 세계 기후소송 보고서 2025(Climate Litigation Report 2025)



사진 출처: UNEP

기후소송의 개념과 현황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소송을 ‘기후 변화의 완화, 적응, 또는 기후 과학과 관련된 법적 및 사실적 쟁점을 다투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콜롬비아 대학교 기후변화법센터(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의 데이터베이



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 세계 누적 기후소송 건수는 총 3,099건에 달한다. 1986년 첫 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된 이후,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기점으로 기후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9년은 처음으로 연간 5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21년에는 150건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논의가 한층 다층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주요 국제 기후소송 현황 및 내용(2023~2025)

연도	재판소	주요 내용
2023	동아프리카공동체 재판소 (EACJ)	동아프리카 시민사회단체(CSO)들이 동아프리카 송유관(EACOP) 건설 사업의 중단을 청구하였으나 절차적 요건 미비로 기각되었으며 이에 항소 제기. 동아프리카지역의 환경, 인권, 개발 간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대표적 기후소송 사례
2024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할 의무가 있는지와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권고적 의견 요청. 재판소는 해양환경 오염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당사국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의무를 제시
2025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AfCHPR)	범아프리카변호사연합(PALU)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인권보호 의무와 관련한 권고적 의견 요청.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인권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
2025	독일지방법원 (Essen)	페루 농부가 독일 에너지회사 RWE를 상대로 자신의 고향 인근에 위치한 빙하호가 기후변화로 인한 용해로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법원은 원고의 재산이 잠재적인 홍수로 인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험(concrete danger)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온실가스를 상당량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
2025	미주인권재판소 (IACtHR)	칠레와 콜롬비아의 요청에 따라 기후비상사태와 인권법상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권고적 의견 요청.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가 미주인권협약하에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
2025	국제사법재판소 (ICJ)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권고적 의견 요청.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기준으로 인정하고,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감축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국가는 기후변화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 함.

표 출처: UNEP,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5, Key Messages 및 저자 작성



기후소송의 주요 판례 검토 -ITLOS, ECtHR, IACtHR, ICJ 권고적 의견 및 결정을 중심으로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2022년 12월,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가위원회(COSIS)’²⁾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의 구체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 등으로 인해 협약 당사국이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ITLOS는 2024년 5월 21일 21인의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권고적 의견에서 ITLOS는 온실가스(GHG)의 배출이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재판소는 국가들이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의무는 ‘엄격한 상당한 주의(stringent due diligence)’의 기준이 적용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재판소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협약상 의무 해석에 적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약컨대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국제법적 의무의 문제로 구체화하고, 향후 국가 간 기후소송과 정책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적 선례를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 유럽인권재판소(ECtHR)

2024년 4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는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사건에서, 국가가 충분한 기후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인권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정생활 존중권)에 따라 국가가 기후변화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³⁾ 또한 재판소는 이 조항에 따라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

2) 바하마, 팔라우, 투발루, 앤티가 바부다, 바누아투,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니우에 등 총 9개국



적이고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협약 제8조는 약 30년 이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하고 점진적으로 감축(substantial and progressive reduction)’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이러한 의무 수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협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제8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정은 정부의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정책 미비가 인권침해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기후소송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을 마련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 미주인권재판소(IACtHR)

2023년 1월 9일, 칠레와 콜롬비아는 미주인권재판소에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2025년 5월,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면서 논의를 크게 사실관계와 기후 비상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권리를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재판소는 ‘기후 비상사태’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를 ① 효과적인 행동의 긴급성(urgency of effective action), ② 영향의 심각성(severity of impacts), ③ 필요한 대응의 복잡성(complexity of required responses) 이 세 가지 요인의 결합과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었다.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을 기후 비상사태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기후 비상사태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재판소는 기후 비상사태의 맥락에서 미주인권협약과 산살바도르 의정서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일반적 의무의 범위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주 지역 다수 국가 헌법에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 “healthy” and/or “ecologically balanced” environment)’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건강한 기후에 대한 권리(right to a healthy climate)’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3) 제8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필수적 구성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국의 역사적 책임, 배출 수준, 역량을 반영해 설정되어야 하며, 부유하고 고배출 국가일수록 더 큰 감축 부담을 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기후완화 및 적응 등 기후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절차적 권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가가 기후 관련 정보 접근권, 공적 참여권, 사법·행정적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현재 세대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세대 간 형평의 원칙에 따라 기후행동과 기후영향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수반한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하면, 이 권고적 의견은 기후위기를 인권의 실질적 보호 영역 안으로 편입시키면서 기후 비상사태의 개념과 ‘건강한 기후에 대한 권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

2023년 3월 29일, 유엔총회는 결의 제77/276호를 컨센서스로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2025년 7월 23일, ICJ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총회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였다. 첫째, 국제법상 국가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환경을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둘째, 그러한 의무 위반의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ICJ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 합의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 1.5°C 기준을 당사국들이 합의한 주요한 공동의 목표(primary temperature goal)로 간주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는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목표로 이행되어야 하며, 각국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ICJ는 기후 정책 수립 시 미래 세대의 이익과 자국 행위의 장기적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



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CBDR 원칙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을 덧붙였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국가가 일반 국제법상 기후변화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앞서 ITLOS가 제시한 권고적 의견이 해양환경 오염 방지의무를 중심으로 국가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점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CJ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 대응을 국제법상 국가의무 문제로 재정립하였으며, 이는 향후 국제 및 국내 기후소송의 법적 근거와 책임 논의에 선례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법적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ITLOS,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ICJ 등 주요 국제사법기구들은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의무를 인권과 환경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기후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기후변화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교·환경·법무 등 부처 간의 조정 및 대응체계를 포함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NDC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 이행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는 현재 세대에 한정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계도 미치는 것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국가가 해양환경을 보호할 책임 역시 미래 세대를 향한 책무임을 인식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제도는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1]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2025), Climate change in the courtroom: Trends, impacts and emerging lessons. Nairobi.
- [2] ITLOS(2023),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and advisory opinion
- [3] Verein KlimaSeniorinnen and Others v. Switzerland(2024), App. No.53600/20(KlimaSeniorinnen)
- [4] IACtHR(2025),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OC-32/35 of 29 May 2025, Requested by the Republic of Chile and the Republic of Colombia Climate Emergency and Human Rights
- [5] Republic of Colombia and Republic of Chile(2023),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on the Climate Emergency and Human Rights
- [6]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2025),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Advisory Opinion of 23 July 2025

김소연 전문연구원

sykim@kmi.re.kr



아프리카

소말리아

소말리아 해적활동 재개 동향 및 시사점

개요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활동이 재개되는 징후가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 2010년대 초 국제사회의 대규모 합동 대응 작전 이후 소말리아 해적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상당 기간 동안 대형 상선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초, 모가디슈 남동쪽 공해상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접근·충격·탐승 시도들은 해적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와 달리 최근 사건들은 단순한 정찰이나 탐색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격이 포함되어 있고, 해적 세력의 전통적 작전방식이 명확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욱 크다. 특히 사건 발생 위치가 해안에서 300~446해리 이상 떨어진 원해(遠海)에 걸쳐 나타났다는 점은 해적세력이 모선(母船)을 확보하여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러한 정황은 해적활동이 단순 재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조직적 측면에서 강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급증으로 인해 국제적인 해군력이 홍해 및 아덴만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감시 공백이 발생한 점도 해적세력 재개에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소말리아의 지속적인 치안 불안, 경제 붕괴, 실업 증가, 어업 갈등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해적 세력의 재조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최근 소말리아 해역은 다시 국제 해상운송의 핵심 위험 수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들은 그 초기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해적활동 동향

2025년 11월 3일, 모가디슈 남동쪽 약 330해리 해상에서 Stolt Tankers가 운영하는 유조선 Stolt Sagaland호를 향해 고속 소형 선박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선박 보고에 따르면, 소형선박에는 4명으로 보이는 인원이 탑승해 있었으며, 접근 과정에서 AK-47 계열 무기로 추정되는 총격이 여러 발 발사되었다. 이는 단순 위협이 아니라 선박의 갑판에 접근해 탑승하려는 시도를 동반한 공격 행위였다. 선박은 즉시 속력을 높여 회피 기동을 실시했고, 민간 무장경비팀이 대응 사격을 하자 공격 세력은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박 또는 선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격 방식이 과거 소말리아 해적세력이 빈번하게 사용하던 전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 또한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소말리아 영해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소형선박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이는 해적세력이 모션을 확보하고 그 모션에서 소형 고속 보트를 분리해 공격하는 과거의 전형적인 작전방식이 재개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림 3. 해적 공격을 받은 스톨트 사가란트호



사진 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Stolt Sagaland호에 대한 공격 전후로 다우선 관련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최근 이란 국적의 다우선 한 척이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된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이 선박이 해적 세력의 모션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 세력은 과거에도 다우선을 납치한 후 이를 작전 본부로 사용해 장거리 해역에서 장기간 정박하거나 이동하면서 상선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데 활용한 바 있다. 다우선은 연료, 식량, 탄약 등 지속적인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대량으로 적재할 수 있어 장거리 작전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실제로 다우선 납치는 해적단이 조직적 활동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모션을 확보하면 해적단은 대양에서 며칠에서 수주까지 머무르며 상선의 항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다우선 납치 정황은 해적 세력이 다시 장거리 작전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2025년 11월 2일~3일 사이에는 동일 해역에서 총 3건의 추가적인 접근 사건이 보고되었다. 세이셸 등록 어선에 고속 선박이 접근하였고,



선박 측이 근처 모션을 확인하고 경고 신호를 발령하자 고속 선박은 즉시 철수했다. 이어 노르웨이 국적 벌크선 Spar Apus호에도 식별번호가 없는 선박이 고속 접근하였고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해적단의 공격 준비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또 다른 사건은 비교적 육지와 가까운 33해리 지점에서 발생하였는데 해적단이 유사한 접근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해적단은 특정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해역 전반에서 일종의 무작위 탐색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해양법적 평가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piracy)’를 제100~107조에 걸쳐 규율하고 있으며, 그 중 제101조는 해적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해적행위라 함은 다음 행위를 말한다.

- (a)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 행위
 - (i)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
 - (ii)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 (b) 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 (c) (a) 와 (b)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적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군함이나 기타 정부선박, 정부항공기에 의한 행위는 해적행위가 아니다. 군함이나 기타 정부 선박 및 정부항공기의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완전히 통제한 후 사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 행위를 한다면 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형 선박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간선박 요건에 부합한다.

둘째, 해적행위는 사적 목적(private ends)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공적인 목적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는 해적행위가 아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소말리아 해적세력이 주체이며, 이들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인질 납치, 화물 약탈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후티반군과는 성격이 다르다.

셋째, 해적행위는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곳'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공해'는 배타적경제수역(EEZ)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협약은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곳'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국제법위원회(ILC)는 이를 무주지(terra nullius) 및 비점유지역(unoccupied territory)으로 보았다. 따라서 내수, 영해 또는 군도수역에서 발생한 행위는 협약상 해적행위가 아니다. Stolt Sagaland호 사건은 공해에서 발생하였으며, 다른 사례들도 소말리아 영해 밖에서 이루어져 장소적 요건을 충족한다.

넷째, 해적행위는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내' 사람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발생해야 한다. 즉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선박 및 항공기 외에 해적행위에 동원되는 선박과 항공기가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에 의한 선상 반란은 물론 테러리스트들이 승객이나 승무원으로 가장하여 승선한 후 행하는 선박 불법 납치는 국제법상 해적행위가 아니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국제협약에 의해 다루어진다.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별도의 선박을 이용해 접근하였으므로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소말리아 해적활동은 해적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시사점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해적세력의 활동이 과거 2010년대 초반 대규모 공격이 재개되기 직전 단계와 유사한 양상으로 되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거리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모선 확보 정황, 공해 및 EEZ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무작위 표적 탐색, 실제 총격과 탑승 시도가 포함된 공격 방식 등을 해적 세력의 조직적 역량이 단순히 회복되는 수준을 넘어, 전략적으로 재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확대에 따라 국제 해군력이 홍해 및 아덴만 지역에 집중되면서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은 해적단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소말리아 해역은 다시 고위험 해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해적단의 공격 위험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경계를 높힐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지역 동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 국적 상선은 중동·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항로를 빈번히 이용하고 있으며, LNG, 자동차, 컨테이너 등 고부가가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비중이 높아 해적 세력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박 보안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야간 경계 강화, 민간 무장 경비원 배치, 고위험 해역 우회항로 검토 등 선박 차원의 대응이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해적 세력의 재활동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국제 해양안보 공조 체계와 정보 공유 체계를 보다 긴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1] The Maritime Executive,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shots-fired-toward-tanker-in-renewed-somali-piracy-activity> (검색일: 2025.11.14.)
- [2]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g51nzdryr6o> (검색일: 2025.11.14.)
- [3]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pirates-board-malta-flagged-products-tanker-off-somalia-ambrey-says-2025-11-06/> (검색일: 2025.11.14.)
- [4] NBC News, <https://www.nbcnews.com/world/africa/somalia-pirates-attackers-ship-machine-guns-rocket-propelled-grenades-rcna242115> (검색일: 2025.11.14.)
- [5] ABC News,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pirates-off-somali-coast-hijacked-tanker-127298542> (검색일: 2025.11.14.)
- [6] 김민, 대한민국의 해양법실행 II 제5장 「해적행위」

김민 전문연구원

km0517@kmi.re.kr



3개월 내 행사계획

제13회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 | 2025년 11월 3일-4일 / 서울 더플라자 호텔

-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는 제13회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는 '기후 위기 시대의 해양법과 블루이코노미(The Law of the Sea and the Blue Economy in the Age of Climate Crisis:Emerging Challenges)'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발표, 토론 진행

국제법평론회 특별세미나 | 2025년 11월 14일 / 숭실대학교 승덕경상관 4층 문변재 424호

- **주요 내용** 국제법평론회가 주최하는 국제법평론회 특별세미나는 '영유권 문제의 다학제적 쟁점과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진행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 2025년 11월 18~19일 / 서울신라호텔 다이내스티

- **주요 내용**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대한국제법학회가 개최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4개 세션의 주제발표, 토론 진행

제1세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회고 및 향후 발전방향
제2세션: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제3세션: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제4세션: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

2025년 11월 20일 / 더 플라자 호텔 서울, 4층 오키드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과 과제, 지속가능한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로 2개의 발표 세션과 라운드 테이블 및 종합 토론 세션 진행

- **주요 내용** 제1세션: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평가와 전망
제2세션: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태지역 해양협력
제3세션: 라운드 테이블(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협력 방향)



3개월 내 행사계획

2025년 해양안보 공동학술세미나 | 2025년 11월 25일 / 부산 아스티호텔 22층 그랜드 볼룸

- 주요 내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평화연구원, 해군대학,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5년 해양안보 공동학술세미나는 ‘글로벌 해양질서 불확실성과 한국 해양안보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진행

제1세션: 글로벌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해양경제안보
제2세션: 중동 및 동아시아 해역 긴장 고조와 해양안보
제3세션: 해양질서 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발전 방향

대한국제법학회 학술대회 | 2025년 11월 29일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 115호

- 주요 내용 대한국제법학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대한국제법학회 학술대회에서는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영유권’을 주제로 발표, 토론과 독도 Alumni 행사 진행

제8회 서울 외교·거버넌스 포럼 | 2025년 12월 11일 / 영원무역 명동사옥 지하5층 강당

- 주요 내용 외교부와 서울국제법연구원이 주최하는 제8회 서울 외교·거버넌스 포럼에서는 ‘국제분쟁 절차와 한국의 기여’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진행 예정